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2024. 11. 29.
도시환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○ **안 건 명**: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

○ **발 의 자**: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도시디자인과장)

○ **발의일자**: 2024. 11. 6.

○ **회부일자**: 2024. 11. 6.

○ **상정 및 의결**: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(2024. 11. 29.)

2. 제안이유

○ 「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,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○ 조례 제정의 목적, 정의에 관한 규정(안 제1조 ~ 제2조)

○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3조 ~ 제4조)

○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주민의견 청취 등(안 제5조 ~ 제6조)

○ 가이드라인 수립 및 사업 시행·유지·관리 등(안 제7조 ~ 제9조)

○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 구성 및 운영(안 제10조 ~ 제19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

-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○ 비용추계: 비대상

○ 입법예고(2024. 10. 2.~10. 22.): 의견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(전문위원 김병욱)

○ 본 제정 조례안은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임.

○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

- 안 제5조에서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고,
- 안 제6조에서는 진흥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설명회를 통한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·시행 하도록 하고, 공공시설물의 유지·관리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규정 하였으며,
- 안 제10조에서 제17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·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.

○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시설물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공공디자인을 구현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통한 정체성 및 품격을 제고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, 관련법령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